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2.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2212850	이용우의원	2025. 9. 10.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3304	한정애의원	2024. 8. 28.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전체회의(2024. 11. 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4668	박정의의원	2024. 10. 11.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4958	김주영의원	2024. 10. 28.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9346	임이자의원	2025. 3. 25.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9825	박홍배의원	2025. 4. 15.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9931	안호영의원	2025. 4. 17.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9936	박민규의원	2025. 4. 17.	·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 7. 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13568	이용우의원	2025. 10. 1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 경과
			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2213623	김위상의원	2025. 10. 1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2214838	김태선의원	2025. 12. 3.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12.23.)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 폐기)

나.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2.5.)에서 이상 11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2.6.)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임. 그런데 최근 퇴직급여 체불 증가 양상을 볼 때, 퇴직금이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

도 불구하고 그 체불이 심각한 수준이고 현행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대상 사업장을 근로자 1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노후소득준비가 부족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의 퇴직연금제도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23조의8 등).

3. 부대의견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확대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설치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30명 이하”를 “100명 미만”으로 한다.

제9조제2항 본문 중 “제23조의8”을 “제23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24조제2항각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23조의14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으로 한다.

제43조 중 “제37조제6항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용 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2조제14

회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

1. 2026년 7월 1일부터 : 50명
2. 2027년 1월 1일부터 : 100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u>30명</u>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4. ----- ----- <u>100명</u> <u>미만</u> ----- ----- ----- ----- ----- ----- -----.
15. · 16. (생 략)	15. · 16. (현행과 같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생 략)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u>제23조의8</u> 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	② ----- ----- ----- <u>제23조의8제1</u> <u>항</u> ----- ----- -----

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 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 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

-----.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① 제24조제2항각호(이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

<삭 제>

<삭 제>

<신 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

②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하는 경우 부담금 납입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의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하나에 해당하는-----

-----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근로기준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
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6항을 위반한 자

제44조(벌칙) -----

-----, <단서 삭제>

<u>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u> 1. <u>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u> 2. <u>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u> 3.·4. (생략)	<u><삭 제></u> <u><삭 제></u> 1.·2.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	---